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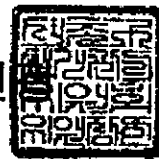
수 신 관내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대표자
(경유)

제 목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1. 귀 기관(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때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층 투표소 확보,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투표소 시설의 불편함 등으로 소중한 선거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거소투표신고기간(2018. 5. 22. ~ 5. 26.)동안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귀 기관(시설)의 거동 불편한 분들이 절차를 모르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기권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투표권은 개인의 고귀한 권리로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투표권이 행사되도록 허위 또는 대리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여 주시고, 투표용지는 반드시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 본인에게 전달하여 본인이 직접투표를 하여야 하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인이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4항제2호(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에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2018. 5. 29.까지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1부.
 2. 관련 리플릿 등 안내자료 2부. 끝.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주임 김향미 관리계장 임덕규 지도담당관 정종익 사무국장 전결 04/18
 721안

협조자

시행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1618 (2018.04.18.) 접수 ()

우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본부세관 별관5층 / http://su.nec.go.kr/su/sb
 전화 (02)571-1390 /전송 0505-058-2153 / warmmer@nec.go.kr / 공개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운영제도

가. 기관·시설 신고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1항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 하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의 장” 등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 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2018. 5. 29.)까지 관할 구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나. 기표소 설치

- 10명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더라도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기표소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위 기관·시설에서 거소투표신고인 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시설이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다. 기표소의 설비 및 참관

-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인석,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함.
- 기표소에의 참관을 원하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음.

2.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신고

가. 기관·시설 신고

- 신고주체 :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 신고기한 : 2018. 5. 29.(화)까지(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후 3일까지)
- 신고서식
 - 10명**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 :
「별지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신고서
 - 10명**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 :
「별지 2」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이 1명도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습니다.

나.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 신고

- 기표소 설치·운영 가능기간 : 6. 4.(월)~ 6. 7.(목)
 - ※ 거소투표용지 발송(6. 3.(일)까지 발송) 및 회송기간을 감안한 기간임.
- 신고기한 : 기표소 설치일전 2일까지
- 신고서식
 - ◇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
「별지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로 같음
(다시 신고 불요)
 - ◇ 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
「별지 3」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신고서
 - ☞ 신고서의 거소투표신고인 수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끝난 후(5.27.부터) 거소투표 신고한 인원을 당해 기관·시설의 장이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 ☞ 신고서식중 기표소 설치·운영일시는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협의 바람.

다. 신고처 :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572-0583,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본부세관 별관 5층)

라. 신고서 제출방법 : 서초구위원회로 팩스전송(0505-058-2153)

3. 기표소의 운영 등

- 가. 기표소를 설치한 “기관·시설의 장”은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투표참관인 좌석 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함.
- 나. 기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 거소투표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등으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다.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임.
- 라. 거소투표자는 기표소에서 투표 후 곧바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투표함에 투입함.
- 마. 기표소를 설치한 해당시설의 장은 기표소의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 바.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 기타 기표소 설치·운영 및 장비대여 등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 572-0583, 관리계)에 문의바람.

4. 거소투표 신고 안내

- 가.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18. 5. 22.(화) ~ 5. 26.(토)
- 나. 신고방법 : 「별지 4」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참조

5. 유의사항

아래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소속직원 등 기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간병인 등 포함)에게 안내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식이 없거나 본인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대리신고·대리투표

나. 본인이 아닌 가족의 확인·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리신고·대리투표

다. 시설관리자 등이 과잉친절에 의한 대리신고·대리투표

라.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관리자 등에 의한 일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강압에 의한 거소투표

마.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을 사유로 거주 중인 19세 이상 생활자 전원을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 거소투표 신고

바.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자 중 거소투표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미신고 또는 10인 미만으로 신고

사.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미통지 등

☞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소투표 신고서 모두에 대하여 대리신고 여부 등을 확인·조사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거소투표신고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신고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 등은 「공직선거법」 제247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별지
1.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1부.
 2. 기관·시설 신고서 1부.
 3.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신고서 1부.
 4. 거소투표 신고 안내문 1부.
 5.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 1부.

[별지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용)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가. 기관·시설의 명칭		
나. 기관·시설의 소재지		
다. 기관·시설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
라. 거소투표신고인 수		

2.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등

가. 기관·시설의 명칭		
나. 설치예정장소		(소재지:)
다. 거소투표신고인 수)
라.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2018년 6월 일 ~ 2018년 6월 일 (00:00~00:00)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49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우리 기관·시설의 명칭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8년 월 일

신고인 ○○기관·시설의 장 인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본 신고서는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작성하여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인 수"란은 해당 기관·시설 안에서 거소투표를 할 신고인 수를 적어야 합니다.
3.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는 반드시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

(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용)

1. 기관·시설의 명칭		
2. 기관·시설의 소재지		
3. 기관·시설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
4. 거소투표신고인 수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49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우리 기관·시설의 명칭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8년 월 일

신고인 ○○기관·시설의 장 인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본 신고서는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작성하여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인 수"란은 해당 기관·시설 안에서 거소투표를 할 신고인 수를 적어야 합니다.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신고서
(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용)

1. 기관·시설의 명칭	
2. 설치예정장소	(소재지 :)
3. 거소투표신고인 수	
4.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00:00~00:00)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149조제5항에 따라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를 설치·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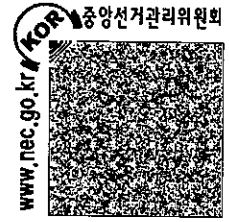
2018년 월 일

○○기관·시설의 장 인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본 신고서는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관·시설 안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작성하여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2.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는 반드시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 (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주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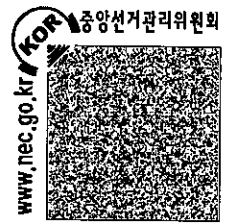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5]

거소 투표 신고서

이 신고서는 2018년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 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 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 5. 25.)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세대주명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표를 하고, 1·2·3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경찰관서장	·장의 직명(성명) _____ (인)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장의 직명(성명) _____ (인)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장의 직명(성명) _____ (인)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인)

_____ 구·시·군의 장 귀하

-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 ②승선자는 합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聯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붙칠 하 는 곳

(접 는 선)

(보내는 사람)



우편번호

(받는 사람)

시 · 도 구 · 시 · 군 읍 · 면 · 동 귀하

등기취급

거소투표신고서 재증

우편번호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 5. 25.)까지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는 선)

(접 는 선)